



#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

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.

**불법투기 쓰레기**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처리됩니다.

몰래 버리는 **불법투기자**를 발견하면 **적극 신고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과 항목	과태료	포상금
별도기구없이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	5만원	1만5천원
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	20만원	5만원
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	50만원	10만원

## 신고 방법

-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,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, 서면, 인터넷 등으로 신고
- 투기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함  
(예)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차량번호, 차종, 색상 등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신고
- 신고인 본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
- 신고자는 신고일 당시 성남시에 주소를 둔자에 한함
- 신고인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월 150만원 (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지급)

## 문의처

- 성남시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729-3191~4 / 재활용팀 3201~5
-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729-5320~4
-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729-6320~4
-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729-7320~4

제대로 된  
쓰레기 분리배출은  
자원으로  
되 돌아 옵니다.

#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안내

- 모든 쓰레기는 **일몰 이후**
- **내 집 앞, 내 점포 앞!!**
- 공동주택은 **단지 내 수거함**
- 판교는 **크린넷**  
(재활용품은 내 집 앞, 내 점포 앞)
- **종량제 봉투 사용**  
(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)
- **주 6회 쓰레기 수거** (토요일 미수거)



성남시 청소행정과

#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

(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거불가)

## 재활용 쓰레기입니까?

Yes

- 종이류 : 박스, 신문, 팩 등  
※ 종이팩은 1kg ↔ 화장지 1롤 교환가능 (동주민센터)
- 비닐류 : 포장재(라면, 커피, 과자), 계란판, 비닐봉지 등
- 플라스틱류 : 페트병(맥주, 음료수), 식용유, 바가지, 요거르트, 락스 등
- 캔·고철류 : 캔, 수저, 통조림, 분유통, 냄비, 프라이팬, 부탄가스, 살충제 등  
※ 부탄가스,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- 병류 : 유리병(소주, 맥주, 주스 등) ※ 병뚜껑 제거
- 형광등, 건전지 : 공동주택단지,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
- 의류, 이불 : 젖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

- ※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
- ※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
- ※ 내용물이 보이게 배출(투명봉투, 끈, 그물망)
- ※ 무상수거
- ※ 재활용품 배출 전용 그물망에 담은 품목: 병류, 캔류, 플라스틱류(그물망표찰 참고)

No

No

## 음식물 쓰레기입니까?

Yes

-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
- 공동주택에서는 지정수거함에 배출
- 판교 공동주택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→ 크린넷 사용
- 김장철 채소
-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겉껍질, 뿌리 등 → 일반쓰레기
- 재료를 잘이거나, 양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→ 음식물쓰레기



《음식물쓰레기 아님》

- 이수시계
- 차류찌꺼기(커피원두, 한약재)
- 껌데기(감각류, 조개류, 땅콩, 호두, 밤)
- 뼈(물고기, 고기)
- 껌질(달걀, 매주리알, 양파, 마늘, 옥수수)
- 씨(복숭아, 감, 사과)



## 타는 쓰레기

(분리 후 최종 남은 쓰레기!!!)

-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 : 지저귀, 나무젓가락, 인형, 코팅종이(전단지, 광고지 등)
- 가족류 : 허리띠, 가방, 신발
- ▶ 소각용 종량제봉투 →



No

## 가전, 가구 있습니까?

Yes

- 대형폐가전 :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전자레인지, 공기청정기, 정수기, 컴퓨터세트 등 ※ 무상수거
- ▶ 신고방법 ☎1599-0903, <http://edtd.co.kr/> 카카오톡 : weec
- [ 소형폐가전(1m이하) : 선풍기, 가스렌지, 프린터, 전기밥솥 등 ※ 무상수거
- 가구류 : 장롱, 책장, 문, 의자, 책상, 침대, 소파 등 ※ 수수료 납부
- ▶ 신고방법 ☎구역별 업체, 전화신고 운영시간 (월~금: 9~18시까지) <http://waste.isdc.co.kr/>

상성환경	신촌1동, 수진1동, 양지동	757-7187
두림환경	신촌2동, 태평2동	707-3900
수정구	신우설비	721-4116
분성	태평1동, 수진2동, 신촌동, 고동동, 시흥동	703-3343
유진기업	신촌3동, 태평3동, 복정동	754-1029
중앙기업	태평4동, 단대동, 산성동	755-4747
평화	성남동, 상대원3동	755-5832
원경개발	중앙동, 금평1동	777-8689
대원환경	금평2동, 하대원동	754-2561
중원기업	은행1·2동, 도촌동	758-3556
성남환경	상대원1·2동	714-6016
나눔환경	분당동, 수내1동, 이매1동	752-0436
한성산업	수내2·3동, 장자3동, 금곡동	732-7363
금성산업	정자1동, 서현2동	734-4008
한진용역	정자2동, 서현1동, 구미1동	753-6401
다엔에스	이매2동, 구미동, 관교동, 삼평동, 백현동, 운중동	759-2117
	아파트1·2·3동	

### 소형폐가전



### 가구류



### 대형폐가전



No

## 안타는 쓰레기 있습니까?

Yes

- 유리, 도자기, 금속, 향아리, 화분, 그릇 등
- ▶ 불연성전용봉투 (봉투판매소에서 구입/ 신고필요없음)

